

의안번호	2202716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4. 8. 20.
추 계 번호	24C2765

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의 수립,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,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마련·적용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6,900만원, 2030년 6억 6,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4억 4,500만원(연평균 6억 8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6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지원센터 지정·운영 (안 제9조)	629	629	629	629	629	3,145	629
지침 마련·적용(안 제14조)	40	40	40	40	40	200	40
합 계	769	669	669	669	669	3,445	6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8조(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	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물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9조(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 등)	국가유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,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0조(조사·연구)	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1조(전문인력 양성)	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2조(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3조(문화재 활용사업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를 매개로 한 콘텐츠,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·제작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4조(문화재 활용사업 지침)	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
2	안 제8조(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	×	- 추계 곤란
3	안 제9조(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	○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	정 등)		
4	안 제10조(조사·연구)	×	- 실시 중
5	안 제11조(전문인력 양성)	×	- 실시 중
6	안 제12조(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)	×	- 실시 중
7	안 제13조(문화재 활용사업)	×	- 실시 중
8	안 제14조(문화재 활용사업 지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재정수반요인	현행 사업(2024년)
조사·연구(안 제10조)	- 국가유산 보편적 관람환경 확대를 위한 연구(1.5억원)
전문인력 양성(안 제11조)	-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(2.1억원)
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(안 제12조)	- 문화유산야행, 생생국가유산 등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(171억원) -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(3.4억원) -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(39억원) - 국가유산 방문캠페인(67.9억원) - 궁중문화체험운영(16억원) -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(3.9억원)
문화재 활용산업(안 제13조)	- 세계유산 축전(60억원) -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(14.5억원) - 국가유산 미디어아트(67.1억원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,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(안 제9조),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(안 제14조) 등은 국가유산청의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마련·적용과 관련한 비용은 지침 발간 및 배부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의 지정(안 제8조)은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전담기관의 지정 여부 및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·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국가유산청은 “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” 연구비로 2022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6조)	100	—	—	—	—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(안 제9조)

-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 각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매년 6억 2,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은 문화재청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센터별 3,700만원으로 가정함
 - － 문화재청은 “문화재지킴이 중간지원 거점센터 운영 지원” 예산으로 매년 센터별로 각각 3,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
 - 17개소 × 3,700만원 = 62,900만원

[표 5] 지원센터 지정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원센터 지정·운영 (안 제9조)	629	629	629	629	629	3,14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마련·적용(안 제14조)

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 발간 및 배부 비용으로 매년 4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지침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지침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 발간 및 배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지침 발간 및 배부 비용은 국가유산청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4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－ 국가유산청은 “문화재돌봄사업 지침 및 매뉴얼 발간사업” 예산으로 2023년에 4,100만원, 2024년에 3,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6] 지킴 마련·적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킴 마련·적용(안 제14조)	40	40	40	40	40	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